



2

남아시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 개관, 과제 및 전략 - 인도, 부탄, 스리랑카, 몰디브를 중심으로

수바 초더리
미국인도학연구소

주지하다시피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채택되면서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보호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비록 그간 '민간전승물 표현' 분야에서 활약했던 이들이 계속해서 무형문화의 전통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활동에 참여해오기는 했지만,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으면서 이러한 주제들이 다시 전면으로 부상했으며 '무형'이란 용어의 개념을 정의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그에 대한 열띤 토론도 함께 이루어졌다.

필자는 이러한 쟁점들을 이 분야의 종사자로서 뿐만 아니라 인도라는 국가적 관점에서, 그리고 음악과 구전전통, 의례, 기타 공연문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기록화와 보존, 보급 활동에 적극 참여한 기록 활동가(기록보관담당자)의 관점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본 발표문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개괄적 검토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협약에 기술된 내용보다는 협약이 담고 있는 정신적 측면을 다루고자 한다.

논의의 대상인 각국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이행 현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부탄

히말라야의 소왕국인 부탄은 다양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국내 입법을 위한 지원 요구는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언어문화연구소(Institute of Language and Culture Studies)는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아 부탄의 문화유산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작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의례 문화의 목록작성 작업도 수행해오고 있다.

부탄은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인력과 제도적 역량에 있어 전반적으로 한계가 있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이행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왕립공연예술학교는 본래 공연예술 훈련기관이다.

그러나 부탄의 새 헌법과 국민총행복지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 발전을 달성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서 문화와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부탄연구센터(Centre for Bhutan Studies)는 국민총행복 개념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장려하고 증진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센터가 추진한 출판물과 세미나 관련 프로그램 중 '미디어와 문화'를 주제로 다룬 세미나가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을 논의하는 시발점으로 보인다. 현재 대표목록에 등재된 부탄의 무형문화유산은 '가면춤(Mask Dance of the Drums from Drametse)' 한 종목이다.

스리랑카

인도양에 위치한 섬나라 스리랑카는 다양한 무형문화유산뿐만 아니라 풍부하고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2003년 채택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국가 목록작업

'스리랑카 무형문화유산 웹사이트' 구축 사업은 2008년 9월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아 시작한 프로젝트로 웹사이트 주소는 <http://www.natlib.lk/inhe>이다. 이 사업을 위해 '무형문화유산 국가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여기에는 인류학을 비롯한 무형문화유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국립도서관이사회(NLDSB)'

는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프로젝트 활동의 첫 단계는 국립 아카이브(National Archives)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에서 무형문화유산 종목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는 조사 대상물 스리랑카 섬 전체로 확대하고 스리랑카의 무형문화유산 관련 데이터를 수집, 보존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보호 활동

2009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문화센터(ACCU)와 협력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연수과정'이 진행되었다. 이는 스리랑카 문화부와 문화사업국이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이었다.

프로젝트의 목표

프로젝트의 주요목표는 스리랑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섬 전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스리랑카 내 다양한 유형의 무형문화유산 파악
- 각 지역 별 무형문화유산의 분류 작업 및 보호
- 스리랑카 무형문화유산에서 나타나는 문화 전파의 배경 조사
- 문화적 변화와 이러한 변화가 무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스리랑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회 문화적 쟁점 이해
- 후세대를 위한 목록작성 및 운영

이 프로젝트에 따라 스리랑카 9개 지역 중 8개 지역에서 사전 조사가 이루어졌다.

몰디브

몰디브는 인도양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로 현재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비준 절차

를 밟고 있다. 소관부처와 유네스코는 국가목록의 목적과 성격, 협약 이행 방식 및 국가 입법 제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한 예비 논의에 착수했다.

아주 작고 고립된 국가인 몰디브는 문화 관리를 위한 전문단체 설립을 통한 연수 및 이행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현재 문화유산 목록화와 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2011년 문화유산부처가 조직되었고 주요 소관 과제는 무형문화유산의 홍보와 보존이다.

인도

인도는 아대륙(亞大陸) 내 최대 규모의 국가로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풍부한 무형 문화유산과 고대유산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2003년 협약 체결 이전에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상당수의 정부 및 비정부 기관이 활동해왔다. 하지만 다수의 기관과 조직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전통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오히려 협약을 위한 인도 정부의 지정을 받거나 국가 목록작성 책임을 맡을 주관기관은 없는 상태이다.

이행 현황

목록작성

현재 공식적인 국가목록은 없지만 국가·주·지역 차원에서 다수의 목록이 작성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과 완성 정도는 매우 다양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목록들은 정부·비정부 조직들이 작성해 관리하고 있다.

문화지도(Cultural Atlas)

유네스코뉴델리사무소는 유·무형문화유산을 포함하는 문화지도 웹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기념물, 공간, 공예, 공연예술 및 민간전승과 박람회나 축제와 같은 행사를 담아낼 수 있는 템플릿을 고안했다. 위키모델과 같은 온라인 공간을 창출해서 다양한 기관들이 일반 정보뿐만 아니라 오디오, 비디오 그리고 이미지 파일 등의 데이터를 함께 올릴 수 있도록 한다.

보호 활동

목록작업에서 보듯 다수의 기관과 조직이 협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음악·춤·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인도 국립아카데미(Sangeet Natak Akademi), 인디라간디국립예술센터(Indira Gandhi National Centre for the Arts)와 문화부 산하의 정부 기관들은 무형문화유산 종목의 증진 및 보존뿐만 아니라 전승을 통해 문화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국 또는 지방 단위의 비정부 기관들도 보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등재신청

인도는 대표목록 등재를 위해 적극적으로 등재신청을 추진해 왔다. 현재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으로는 산스크리트연극 쿠티야탐(Kutiyattam), 라마야나 전통공연 람릴라(Ramlila), 베다 음송 전통(Vedic Chanting), 공동등재 종목인 나브루즈 축제(Navroze), 인도 히말라야 가르왈 지역의 종교 축제와 제의연극 람만(Ramman), 차우 댄스(Chhau dance), 라자스탄지방 칼벨리아조의 민속춤과 노래(Kalbelia), 그리고 깨랄라 지역의 의례극과 춤극인 무디예투(Mudiyettu)가 있다.

2003년 협약 이행에서 나타난 쟁점 및 도전

해당지역 국가들의 규모, 인프라와 역량 등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서론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무형문화유산의 연행과 이를 보존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협약을 채택하기 이전에도 있었지만 협약이 도입되면서 무형문화유산 관련 문제들이 전면에 부각되어 정부 조직 내에서 다루어지고 무형문화유산에 적절한 어휘와 개념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각국의 통치문화와 제도적, 교육적 인프라에 차이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한가지 방식을 전체에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안겨 줄 수 있다.

제기된 문제와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약과 협약의 기본 목적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약의 기본적인 목표는 협약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보호'이다.

협약의 핵심 보호 조치를 살펴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목록작성 : 무형문화유산 항목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 인식 제고 : 무형문화유산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도록 장려한다.
- 활성화 :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의 생존력을 강화한다.

목록작성의 장단점

협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와 사례연구를 살펴보면, 목록작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목록작성이 협약에 가입한 모든 당사국의 의무 사항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유네스코는 목록작성에 대한 템플릿(template)이나 모듈(module)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목록작성의 목적은 '체계적으로' 무형문화유산 종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준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포괄적으로 모든 무형문화유산 종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는 데 있다. 협약은 목록작성 작업이 하향식(top-down)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목록작성 작업은 공동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 인지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하지만 기존 목록과 다양한 국가의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여 통합하는 방식으로 목록작성을 진행하게 되면, 수집된 데이터가 이러한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국가 목록'에 포함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공동체에 기반한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각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각 지역이나 지방, 국가, 마을 및 도시를 아우르는 대규모 전담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민속학적 현장연구에 참여해 본 사람이라면 각 공동체와 문화단체에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의 범주는 다음 종목들을 포함한다.

- 가.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인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 나. 공연 예술

- 다. 사회적 관습, 의례 및 축제행사
- 라.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 마. 전통 공예기술

협약은 각국이 재량에 따라 목록작성 작업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약에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목록작성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의 개념에 문제가 있다. 공동체의 개념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며 공동체, 단체 심지어 개인이 될 수도 있다. 적절한 지도자나 대표자를 지정하는 일은 많은 시간과 세심함이 필요한 작업이다. 또한 항상 가능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공동체의 역학관계를 이해할 필요도 있다. 목록작성은 문화 소유권과 공동 소유권의 개념을 포함할 수도 있는데 이 두 개념은 종종 대립되기도 하며 무형문화유산과 마찬가지로 매우 유동적이며 항상 변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목록작성이 관료적 체제와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무형문화유산은 사람들의 삶속에 살아 숨쉬며 그들과 함께 변화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관료적 문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형문화유산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비단 목록작성 과정만이 전통을 '박제화'할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방송이 되었건 축제나 경연이 되었건 어떠한 형태의 공식적인 인증 절차도 같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권리와 승인의 문제는 복잡한 쟁점사항이다. 많은 경우 '사전에 정보가 제공된 자유로운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보다는 기술된 내용에 얽매어 이행되는 일이 종종 있다. 축제처럼 동의나 허락을 구할 대표가 없는 무형문화유산 중 목들이 상당히 존재한다.

따라서 목적, 규모와 정도에 따라 목록작성의 절차 자체가 목적이 되고 정작 무형문화유산 보호라는 핵심 목표에는 시간과 자원이 할당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목록작성, 등재 신청 및 기타 정의

목록작성이 등재 신청의 선결과제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표목록에 무형문화유산을 등재하는 것이 협약의 중심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협약 이행의 초점

이 목록작성이나 보호가 아닌 등재에 집중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을 현재에도 연행되고 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살아있는 유산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등재를 통해 '소멸'되어 가거나 이미 사라진 유산을 되살리고 전통 그대로 변하지 않게 할 수 있으리라는 잘못된 생각이 만연해 있는 것 같다.

보호

앞서 살펴본 핵심 보호 조치와는 별개로, 협약은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열거하고 있다.

- 가. 사회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기능을 증진하고 이러한 유산의 보호를 기획 프로그램에 통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을 채택한다.
- 나.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역량있는 (주무) 조직을 지정 또는 설립한다.
- 다. 특히,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에 주목하여 무형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과학적·기술적·예술적 연구 및 연구방법을 촉진한다.
- 라. 다음을 목표로 하는 적절한 법적·기술적·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한다.
 - (1)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는 훈련기관 설립이나 강화를 장려하고 이러한 유산을 공연하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과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유산의 전수 장려
 - (2) 무형문화유산의 일부 특정한 부분에서 접근을 규율하는 관례를 존중하면서도 이러한 유산에 대한 접근을 보장
 - (3) 무형문화유산을 위한 기록기관의 설립 및 이용 편의 제고

연구, 기록화, 기관의 지정 및 발전과 국가 계획의 일환으로 유산정책의 수립 등 협약의 중요한 측면과 장기적인 정책이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호 및 개발

해당 지역에서는 자원과 기존 문화 인프라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대한 다음과 같은 공통의 요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적절한 기관 혹은 조직의 설립 및 지정
- 목록작성 사업 수행 역량 훈련 및 강화
-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 제정 및 정책 수립
- 무형문화유산 진흥, 보존, 전승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 무형문화유산 연구조사 및 기록화
- 재정 마련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증진,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주요 과제는 지속가능성 및 전승자들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늘날 전통적인 후원 방식이 위축되는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공동체를 위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능력 있는 인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책이 개발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모든 관련 활동이 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제안 및 권고 - 협력

해당 지역에서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네스코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비롯된 유네스코의 새로운 사업은 균일한 교육을 제공하고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인도의 '전통지식 디지털 도서관'은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유사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공예 부흥 트러스트'는 공예 전통 정보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해당 웹사이트를 방글라데시, 부탄, 몰디브, 라오스, 파키스탄, 네팔 및 스리랑카까지 확대하였다.

교육과 프로젝트 분야에서는 협력의 범위가 넓다. 몰디브처럼 상대적으로 고립된 섬 국가는 태평양 지역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탄은 인도 히말라야산맥에 위치한 국가들과 유산을 공유하고 있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력망 구축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참고 문헌

http://www.irci.jp/assets/files/ParticipantsReports/Maldives_Report.PDF

http://www.accu.or.jp/ich/en/training/casestudy_pdf/09_10/case_study_report_srilanka.pdf

<http://www.ichcap.org/en/activities/Details%20of%20the%20Joint%20cooperation%20project%20Cultural%20Atlas%20of%20India.pdf>

본 필자의 경험은 인도에 국한되지만 이 글은 유네스코뉴델리사무소의 모에찌바(Moe Chiba)가 제공한 정보에 기반해 작성하였다. 유네스코뉴델리사무소는 그 관할에 속해 있는 부탄과 스리랑카, 몰디브의 쟁점들을 개관하는 일을 맡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자료를 참조.

<http://w.ichcap.org/en/activities/Details%20of%20the%20Joint%20cooperation%20project%20Cultural%20Atlas%20of%20India.pdf>